##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이병진・이연희・윤준병

송옥주 · 권칠승 · 주철현

윤후덕 · 홍기원 · 소병훈

한정애 · 이수진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, 이력 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, 생산지와 유통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'포대갈이'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.

또한,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됨.

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, 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 보하고,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(天日)염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수산물 이력추적관리) ①	제27조(수산물 이력추적관리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대통령</u>	② <u>다음 각</u>
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	
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	
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
	제4호에 따른 천일(天日)염
<u>&lt;신 설&gt;</u>	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수산물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